

## 『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』 관련 규정

### □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(법 제14조)<'21.1.1 시행>

- 내용 :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,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
- 대상 :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②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(토목·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상위 1,000위 이내의 건설회사
- 벌칙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관련 법	관련 시행령
<p>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</p> <p>① 「상법」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<u>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<u>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, 시설,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75조(과태료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u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</u></p> <p>2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</p>	<p>제13조(이사회 보고·승인 대상 회사 등)</p> <p>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</u></li> <li>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)의 순위 <u>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</u></li> </ol> <p>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(「상법」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)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</li> <li>2. 안전·보건관리 조직의 구성·인원 및 역할</li> <li>3. 안전·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</li> <li>4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</li> </ol>